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법 제8조제11항"을 "법 제8조제12항" 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요구 · 조사의뢰 및 동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